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

- 2023년도 -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서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1장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1.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의 도입취지1
- 2.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1
- 3.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현황3

제2장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직무 등3

제3장 고충민원 처리절차 및 현황

- 1.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4
- 2.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5
- 3. 2023년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6
- 4. 주요 고충민원 처리결과14

이 보고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달서구 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처리·의견표명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제 1 장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1.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의 도입취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고충민원의 처리와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2.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위원회 구성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로 한다)에 따라 고충민원의 합리적인 처리 및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국민권익을 보호하고자 설치되었다.

조례에 따라 위원회는 3인 이내로 구성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속기관과 특별한 이해관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준용)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위원 임기 및 신분보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 시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할 수 없다.

1.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속기관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다. 위원장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 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3.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현황

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현황

(2023. 12월말 기준)

직 위	성 명	위촉기간	자격요건 및 주요이력	비고
위원장	권○일	2022. 1. 10. ~ 2024. 1. 9. (2년)	5급이상 공무원 (경상북도 사무관 퇴직)	수, 목, 금
위원	정○국		시민사회단체 추천 (매일신문사 국장 역임)	월, 화, 수

나. 근무장소: 청림감사실내(독립공간, 3평정도)

다. 운영방법: 주3일 근무(매주 수요일은 2인 합동근무)

라. 2023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 활동수당: 편성 46,800/집행 45,900천원
- 운영경비: 편성 1,200/집행 1,164천원
- 집행잔액: 936천원 반납

제 2 장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직무 등

1.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직무 및 의무

가. 위원회 직무

위원회는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사표명,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조사 및 평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조정·중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위임·의뢰하는 사안의 조사·처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나. 직무 제외사항

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회로 고충민원이 신청이 된 경우 조례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직무로 보지 않는다.

1. 구의회에 관한사항
2.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다. 비밀유지의 의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비밀유지의 의무에 따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회의운영

위원은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감사의뢰 결정에 관한사항,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제 3 장 고충민원 처리절차 및 현황

1. 고충민원 조사·처리 등

가. 고충민원 신청

고충민원은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나. 고충민원의 조사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1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련 대상 기관에 대하여 질문 및 현황을 청취 할 수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직접 조사·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고충민원은 이를 관련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게 이첩할 수 있다. 또한 고충민원 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고충민원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허위 또는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

다. 의견표명 및 의견제출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할 수 있고,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 권고,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 처리결과 등의 통보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릴 경우에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와 조사가 완료 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그 사실 및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가. 분야별 고충민원 접수현황

<단위:건>

계	건축	교통·주차	기후	건설	복지	위생	기타
22	7	4	3	3	1	1	3

나. 처리유형별 고충민원 현황

- 의견표명(8건), 시정권고(5건), 합의권고(5건), 제도개선(1), 이첩(3)

3. 2023년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민원내용	처리결과	관련부서
1	2023. 1. 3.	아파트관리 사무소에서 공동주택지원 사업 신청서식의 임의변경 및 달서구의 정보공개자료 미흡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조례에서 정한 서식을 임의로 변경된 사실이 있고, 달서구에 요청한 정보공개자료는 민원인이 알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누락	○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사용하는 사업신청 양식을 표준양식을 사용토록하고, 해당부서에 법률에서 정한 공개대상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미공개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함 【의견표명】	건축과
2	2023. 1.13.	건축과 직원의 민원인 응대에 대한 불친절과 안전 침해	○ 민원인의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 요청 건에 대한 건축과 직원의 불친절과 안전침해	○ 고충위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경위를 파악 및 조치(담당직원 에 대한 응대교육)를 담당부서에 권고 【시정권고】	건축과
3	2023. 2. 1.	무허가건물 철거 후 가납부 처리한 취득세의 환급 요청	○ 민원인은 소유주택의 일부가 무허가건축물로 적발되어 자진철거를 하였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동일한 조건의 이웃은 취득세를 환급받은 사실을 알고 민원제기.	○ 민원인이 철거한 무허가건축물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에 해당하는지를 정밀 조사토록 세무과에 권고하였음 ○ 세무과에서는 건축물의 과거 증빙자료를 통해 취득세 부과기간이 경과된 부과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가납부한 취득세를 반환 조치하였음 【시정권고】	세무과 (건축과)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민원내용	처리결과	관련부서
4	2023. 2. 3.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하여 특혜의혹 제기 및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원동 보훈병원 밑 승강장은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곳임에도 특정 상가를 위해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특혜 의혹 있음. ○ 이곳은 월광수변공원 주동로 도로로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지만 불법 주정차로 교통방해를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승강장 특혜 설치와 관련하여 승강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설치규정(교통량, 이용횟수, 도로주변상황 등)에 맞게 설치되었음을 안내함. ○ 00약국앞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2023년 5월에 단속 카메라 설치를 완료함. <p style="text-align: center;">【시정권고】</p>	주 차 관리과
5	2023. 2. 8.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으로 건물보상완료된 후 건물 임의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천동 월배성당 부근 토지와 건물은 대구시에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였는데도, 일부 건물의 경우 복수의 전 소유자들이 임의로 계속 사용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광역시의 도로건설사업으로 건물보상 완료 후 건물 소유자의 임의적 계속 사용에 대해 부당하다는 민원으로 도로건설 시행기관인 대구광역시 보상과로 민원제기토록 안내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표명】</p>	건설과
6	2023. 2.10.	근린공원 입구에 설치된 출입방지용 교통봉 설치부당 및 불법장기 주정차 단속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천동 아파트 근린공원 입구에 차량 진입 금지용으로 설치된 교통봉이 공원이용자들의 출입에 방해되어 철거 요청 ○ 공원입구에 유치원 통학 차량의 장기 주차로 인하여 통행 불편 및 주민들의 주차에 방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행정과에 통행자의 불편사항을 검토하여 교통봉 제거 또는 위치조정 안내 ○ 관련 00유치원에 주민 불편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계도조치 및 불법주차 상황 지속관리토록 함.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표명】</p>	교 통 행정과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민원내용	처리결과	관련부서
7	2023.2.16	동일지역 주차 차량에 대하여 동시다발로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 대구로 인사이동되어 교통실정을 잘 모르던 민원인이 달서구 감삼동 오피스텔 건물인도에 장기 주차하여 구청 차량 이동카메라에 수회에 걸쳐 불법 주차로 단속되어 과태료 연속 부과에 대한 구제요청	○ 민원인의 억울함은 이해하나 불법주차에 단속된 이상 예외가 없으며 구제의 방법이 없음을 안내하고 일반민원으로 담당부서에 이첩함 【이 첩】	주 차 관리과
8	2023. 4. 4.	인도 및 도로 쪽 전봇대로 인하여 주민의 통행 불편 및 사고 위험에 따른 전봇대 이설 요청	○ 월배로 주변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로 확장으로 기존의 구 도로 갖길에 설치된 전봇대가 차도 방향으로 돌출된 형태가 되어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 상존	○ 현장확인후 이전 필요성을 감안하여 구청 건설과와 한전 남대구지사를 방문하여 전주 이설 협조 요청을 하였음. ○ 한전 측에서 이설에 관한 관련 법규 및 현지여건 등을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3개월 내) 전주를 이설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시정권고】	건설과
9	2023. 4.11.	국가유공자 차량에 부과된 차량환경개선부담금 환급 및 감면 조치	○ 민원인의 부친은 6.25 참전 국가유공자로서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납하여 차량이 압류 처분된 상황에서 부친이 사망한 후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있음을 인지하고 감면 요청	○ 국가유공자의 차량환경개선 부담금 환급요청 사항은 유공자에 대한 특례사항의 관련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일로써 소급이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미납환경개선부담금을 조속히 납부하고 차량의 압류를 해제토록 권고 【의견표명】	기 후 환경과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민원내용	처리결과	관련부서
10	2023. 4.18.	아파트 주변 식당의 불법 무허가 건물 사용과 음식 냄새로 인한 주민의 환경 피해	○ 아파트 모서리에 위치한 3층 상가건물에 식육식당이 운영되고 있어 고기굽는 과정에 발생하는 심한 냄새로 인해 이웃 아파트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방해	○ 위생과에 민원과 관련하여 상황 설명 및 협조요청 후 식당 측과 협의, 냄새 흡입기2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냄새를 줄임 【합의권고】	위생과 (건축과)
11	2023. 4.18.	통장 회의시 회의 자료 미비치 및 회의 수당 부당지급에 대한 시정	○ ◇◇동 행정복지센터는 코로나로 인하여 통장 회의를 서면으로 실시함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 수당 지급시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관련부서(총무과)에 통보 및 교육 등을 실시토록 권고 【시정권고】	총무과
12	2023. 5. 8.	인도에 설치된 고정 블라드로 인하여 통행불편 및 차량진입 장애	○ 감삼동 ◇◇상가건물 인도에 주민 통행편의를 위해 차량진입 블라드를 설치하였으나,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건물입주 및 물품 상하차를 위해 블라드 제거요청	○ 기존 5층 상가 출입구 쪽에 설치된 블라드를 차량출입에 영향이 없게 관련과에 이전을 요청하여 불편이 없게 4m 이전 조치를 하였음. ○ 구청에서는 주변 다른 상가의 인도 불법주차와 맞물려 형평성을 고려한 블라드의 완전 철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 【의견표명】	건설과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민원내용	처리결과	관련부서
13	2023. 5.16.	생계곤란자로 긴급생계지원이 필요하여 코로나 지원금의 조기지원을 요청	○ 민원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당장의 끼니가 걱정이 되어 코로나 지원금 10만원을 조기 지급 요청하였으나 해당부서에서는 예산 및 지급 순위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조기 지급이 어렵다 함.	○ 코로나 지원금의 지급 규정이 있으나 당장의 생계곤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행복나눔과에 코로나 지원금 조기 지급토록 협조 요청 ○ 긴급 구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코로나 지원금 10만원을 조기 지급함. 【합의권고】	행 복 나눔과
14	2023. 5.17.	옥상누수 현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 요청 후 불이행에 대한 구청의 협조요청	○ 대곡동 ◇◇아파트 옥상 누수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기한 물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응하지 않으므로 구청에 협조 요청	○ 아파트 입주민과 아파트관리사무소간의 물질적 보상비용 청구문제는 사인간의 관계로 구청의 개입이 적절치 않음. ○ 다만, 최상층 누수아파트에는 양자간 합의로 환풍기를 설치하여 습기 방지에 힘을 쓸 것을 관리사무소측에 권고 【합의권고】	건 축과
15	2023. 6.2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내 주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제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협소 문제로 지하의 전기충전소 앞에도 주차가 가능하다는 안내벽보에 의거 차량을 주차함. ○ 그 후 불법주차로 신고가 되어 과태료 8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아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으나 비협조로 민원제기	○ 사인간의 계약관계(아파트 관리규약)로써 구청의 개입이 부적절하고 상호 조정 사항임을 안내. ○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고 관리사무소측에서 과태료 8만원을 대납 처리함. 【합의권고】	기 후 환경과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민원내용	처리결과	관련부서
16	2023. 7. 7.	건물 보상이 완료된 진천동 도로건설 구간의 ○○부동산사무소 계속 불법영업 단속 요청	○ 민원인이 지난 2월 진천동 일부 구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완료 건물의 계속 사용 단속 민원에 대해 대부분 영업을 중지하였으나, ◇◇부동산은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단속 요청.	○ 달서구에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23. 4월 해당 업소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한 사실이 있음 ○ 현재 해당 업소에 대하여 영업활동을 한 증거가 없고 해당일대는 소유권자인 시에서 관리책임이 있어 대구시로 이첩함 【이 첩】	토 지 정보과
17	2023. 8.29.	동일 아파트에 대해서 다른 명칭 사용으로 주민 불편 가중	○ 민원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명칭이 ◇◇아파트, ◇◇맨션, 1차◇◇아파트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어, 일상 생활은 물론 한국부동산원의 입찰사이트인 'K-아파트 홈페이지'사용시 정보검색이 어려우므로 동일 명칭 사용 요청	○ 건축과 및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 명칭을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에 명기된 명칭으로 사용토록 의견표명 하였으며, 특히 K-아파트 홈페이지명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권한으로 '◇◇아파트(◇◇맨션)'으로 병기 등재할 수 있음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알려 관계인의 정비검색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음 【의견표명】	건축과
18	2023. 9.14.	간판의 심야 홍보 조명으로 인근 주민 수면 방해에 대한 대책요청	○ 진천동 대로변 고층 빌딩에 입주한 ◇◇의원에서 부착한 홍보간판의 심야 조명으로 맞은편 주택가 주민들이 불편 호소	○ ◇◇의원 돌출 간판의 조도가 야간에 지나치게 밝음을 확인하고 기후환경과에 ◇◇의원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의원에서 추석 연휴 기간중 조명간판에 자동 점멸장치를 설치하여 야간에 자동 소등이 되도록 함 【의견표명】	기 후 환경과 (도 시 디자인과)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민원내용	처리결과	관련부서
19	2023. 9.15.	◇◇유치원 내 주차면을 타 용도 사용 및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	○ ◇◇유치원 내 전용 주차장(4면)을 설치 하였으나 용도 외 사용이 의심되고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함에도 인근 도로에 통학차를 계속 주차하고 있음	○ ◇◇유치원의 경우 도로변에 주정차 시설 설치 등 특단의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 원생들의 등·하원 시 교통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신설 주차장 사용에 위법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의견표명 함 【의견표명】	주 차 관리과 (건축과)
20	2023. 9.20.	장애인 경사로 재설치 요구	○ 1993년 상인동 ◇◇타운 입주 당시 1층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철거된 장애인 경사로를 장애인과 노약자 보호를 위해 재설치 요청	○ 아파트 입구 경사로 등 시설물은 입주민들이 공동 사용하는 사유재산의 영역에 속하며, 이에 대한 신설이나 변경 등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안내. ○ 다만, 건축과에서도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시공사 등 관계자들과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토록 권고함. 【합의권고】	건축과
21	2023.11.15.	구청 홈페이지에 미결재된 공문게재 및 아파트관리 열린주민학교 관련 정보미제공	○ 「2022년도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 공고 안내문 하단에 주무관, 팀장, 건축과장의 결재 라인이 모두 공란 상태임. ○ 「2023년 아파트 관리 열린주민학교 참가신청 안내문의 자료요청에 주무관의 자료 회피 및 무성의한 태도불만	○ 민원과 관련하여 고충 민원이 아닌 관계로 담당부서인 건축과로 이첩함. 【이 첩】	건축과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민원내용	처리결과	관련부서
22	2023.12.18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연수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공동주택 지원 대상은 20 세대 이상의 공동주 택중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만 적용 규정 ○ 지원 사업의 취지는 좋은 아파트 건축 기술의 발달 등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보 수가 필요없고 예산의 낭비 발생 ○ 따라서 지원기준 연수 상향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연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므로 구의회 및 공동 주택 관련단체, 기타 다른 지자체의 사례 등을 참조 하여 관련부서에 제도개선사 항으로 통보 <p style="text-align: center;">【제도개선】</p>	건축과

4. 주요 고충민원 처리결과

① 무허가건축물 기납부 취득세 반환 요청

□ 민원내용

- ▶ 민원인이 소유한 건축물은 30여년 전인 1994년에 취득한 건물로 매입 당시 부터 이미 건물 1층 뒷편에 비가림용 가건물(19㎡)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2021. 3. 4. 민원인을 포함하여 이웃의 주택 5가구가 동시에 달서구청 건축과에 무허가건축물로 적발되었음.
- ▶ 이에 2021. 3. 22. 달서구청에서는 5가구 주택 소유자에 대해 무허가 건축 면 적 부분의 취득세 부과 및 당해 무허가건축물의 자진 철거명령을 하였음.
- ▶ 이에 따라 민원인은 2021. 3. 30. 취득세 112,480원을 자진 납부하였고 2021. 4. 23. 무허가건축물도 자진철거를 하였음.
- ▶ 그 후 민원인은 취득 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취득세 납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함.

□ 사실관계 확인

- ▶ 민원인이 제기한 본인 소유 진천동 ○○○번지 무허가건축물의 기납부한 취득 세 반환요청건은 위에서 언급한 민원내용과 대부분 사실관계가 맞음.
- ▶ 이에 대해 구청에서 취득세 부과시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항및 ② 항의 원칙을 적용하여 부과한 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및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총당과 환급) 규정을 살피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보여짐.

□ 의견표명

- ▶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2023. 2. 7. 및 2023. 2. 13. 구청 세무과에 위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세법」 제60조의 규정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환급과 관련한 각종 증빙자료를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취득세 환급을 위한 적극 행정을 요청함.

□ 처리결과(부서 조치내역)

- ▶ 구청에서는 신청인의 무허가건축물이 2013년 4월 이전부터 존재하였음을 과거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에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의 규정에 따라 2023. 2. 14. 민원인에게 취득세 112,480원 환급하였음.

□ 관련법령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3. 그 밖의 경우: 5년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총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 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보상완료 후 계속사용 부당

□ 민원내용

- ▶ 진천동 『월배초교-대천로간 도로건설』과 관련하여 현재 편입 토지와 건물을 보상 중에 있으며, 특히 건물의 경우 보상 완료한 건물은 등기상 소유주가 대구광역시로 등재되어 있어 개인이 사용할 수 없음.
- ▶ 그럼에도 진천동 ○○○번지의 건물주(○○공인중개사)는 보상을 받은 후 그 건물을 임의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 이를 조치 바람.

□ 사실관계 확인

- ▶ 이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19. 8. 20. 대구광역시장이 ‘대구광역시 공보(제1175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9-181호』’로 고시한 사업임.
- ▶ 주요 내용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인 『월배초교~대천로 도로 건설』 사업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권자가 대구광역시장이며, 이에 따라 도로건설과 관련하여 보상 완료된 건물의 임의사용 등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역시 대구광역시장에게 있음.
- ▶ 따라서 『월배초교-대천로간 도로건설』의 사업주체는 시행자인 대구광역시이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달서구청은 관여하는 바가 없음.

□ 의견표명

- ▶ 『월배초교-대천로간 도로건설』과정에 대구광역시(보상과)가 보상을 완료한 건물에 대해 등기상 소유주가 대구광역시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전 소유주가 계속 사용하고 있음에 대해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함은 일리가 있음.
- ▶ 이 사업은 2019년 8월 20일 ‘대구광역시 공보 제1175호’에 고시되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사업 전반을 주관하는 사업시행자가 됨.
- ▶ 따라서 민원인이 신청한 ‘도로건설사업 건물보상 완료 후 소유자의 임의 계속사용 부당’ 건은, 사업시행자인 대구광역시 소관 업무이므로 대구광역시에 정식 문서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의견표명함.

□ 처리결과(부서 조치내역)

- ▶ 해당부서(건설과)에서도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 표명에 따라 민원인에게 사업 시행자인 대구광역시장에게 정식 문서로 민원을 제기하도록 알려줌.

□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진천동 라온프라이빗센텀 앞 차도의 전주이설 요청

□ 민원내용

- ▶ 달서구 라온프라이빗센텀 아파트(진천로16길 26) 인근 모퉁이 차도의 가장자리에 한전주 1본(전주번호:7929R282)이 있어 교통사고 유발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설 요청

□ 사실관계 확인

- ▶ 이곳은 2018년 라온프라이빗센텀 아파트가 신축되고 그 앞에 새로 차로가 확장 및 포장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 즉 이전부터 차로의 바깥쪽 인도에 있던 이 전주를 새롭게 차로 확장 및 포장을 하면서 차로 밖으로 이설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로 이로 인하여 교통 혼잡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 의견표명

- ▶ 구청 건설과에 민원접수 사실 통보 및 현장 점검을 한 후, 한국전력공사 남대구지사에 전주 이설요청 공문을 발송토록 권고함.
- ▶ 또한 고충위에서도 2023. 4월 한전 남대구지사를 방문하여 민원사항을 설명하고 조속한 전주이설을 촉구함.

□ 처리결과(부서 조치내역)

- ▶ 한전 남대구지사에서는 배전선로 이설에 관한 관련규정 및 행정절차, 비용 부담, 설계, 공사 기타 현지여건 등을 검토하여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 해당 전주를 이설하겠다고 답변함.
- ▶ 2023. 12월말 현재 해당 전주는 한전 비용부담으로 인근 인도쪽으로 이설 하였음.

□ 관련법령

- ▶ 한국전력공사 배선운영처 「배전선로 이설업무 기준」
제3절 공공용지 활용의 경우
 1. 공중의 통행 또는 소방출동로 확보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행정관서장, 주민대표, 이해당사자 또는 관리자 등이 배선 선로를 이설요청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지장이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장이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빙사진을 첨부하여 사업소장의 판단 하에 우리 회사 부담으로 한다. 다만, 배전선로의 이설 위치에 대한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설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 소방출동로 확보에 지장이 되는 경우는 관련 행정관서장이 이설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7)의 이설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회사 부담으로 이설한다.
 2. 공공용지에 설치된 배전선로가 고객의 토지, 건조물, 주차장 등 고객 구내 출입에 지장이 되는 경우
 - 가. 기존 건조물의 출입에 지장이 되는 경우 건조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우리 회사 부담으로 이설한다.
 - 나. 건조물 등의 신증축, 개축 이후 출입지장 발생시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우리 회사 부담으로 이설한다.
 - (1) 주거용 건조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신·증축, 개축으로 출입지장이 발생한 경우

4 국가유공자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기납부 금액 환급 요청

□ 민원내용

- ▶ 민원인의 부친 김○○은 6.25참전 국가유공자로서 2002년부터 경유 승용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해오다 2022년 사망하였으며, 구입 시부터 2014년 까지 해당 차량에 부과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1,059,760원을 부과받고 납부하여 왔음.
- ▶ 그러나 민원인이 부친 사망에 따라 차량 소유권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부터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이 미납되어 해당 차량이 달서구청(기후환경과)에 의해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
- ▶ 이에 민원인은 관련 법규를 연찬하여 국가유공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함.

□ 사실관계 확인

-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달서구청(기후환경과)에 협조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원인의 당해 차량은 2002년식 렉스턴 승용차로 '대구29모○○○○'이며 2002. 6. 21. 김○○ 명의로 최초 등록하여 사용되어 왔음.
- ▶ 한편 1991.12.31.제정되고 1992. 7. 1.부터 시행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항에는 당초 국가유공자 차량도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었으나, 2013. 7. 16. 같은 법 제9조 제3항을 일부 개정(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특정 장애인 소유차량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이에 민원인의 당해 차량은「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제1항에 따라 최초 구입 및 등록월인 2002. 6. 21~6. 30까지 첫 부과금 3,150원을 시작으로 이후 계속 부과되었으나, 2013. 7. 16. 같은 법 제 9조제3항이 일부 개정 되고 또한 부칙<법률 제11916호, 2013. 7. 16.> 제2조(개선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따라 2014년 상반기부터 국가유공자 차량 1대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되었음.
- ▶ 따라서 민원인 부친의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2002. 6. 21.부터 2013. 7. 16. 까지 11년간 총건수 24회, 총금액 1,429,980원이 부과되었으며, 그 가운데 2023. 4. 13. 현재 1,059,760원이 납부되었고 401,600원이 미수납 되고 있음.
- ▶ 한편 민원인의 당해 차량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납부기간 중에 여러 번 납부를 하지 못하여 미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장기 체납으로「지방세

징수법」 제33조(압류) 및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에 따라 2023. 4.13. 현재 총401,600원이 미수납상태로 되어 있어 당해 차량이 압류된 상태임.

□ 의견표명

- ▶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음.
- ▶ 이에 따라 고충처리위에서는 해당부서 제출자료 및 관련 법규 검토 등을 거쳐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달서구청이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며, 납부자도 형편에 따라 성실히 납부 및 납부 의지가 있었다고 봄.
- ▶ 당초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시행된 1992. 7. 1.부터 국가유공자에게도 모두 부과되었으나, 2013. 7. 16. 보훈예우차원에서 국가 유공자 소유의 경유차량 1대에 대해 같은 법 제9조제3항을 개정하면서, 부칙(법률 제11916호)으로 그 시행 시기를 2014년 상반기부터 시작한다고 명시하였음.
- ▶ 그러나 많은 경우 담당공무원 및 수혜 대상 주민들 서로가 개정 법규의 해석오류 및 특히 부칙 조항을 잘 살피지 못함에 따라, 기존에 납부하였던 부과금까지 소급하여 감면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민원인에게 이러한 사실관계를 잘 이해하여 오해를 불식하기 바라며, 아울러 미납된 부과금(401,600원)을 납부하고 차량 압류해제를 받아 재산권을 회복하기를 권고함.
- ▶ 또한 달서구청에서도 업무 관계자의 전문 지식을 함양시켜 민원인의 민원 사항 특히 법률 개정이나 제도 변경의 경우 그 취지 및 내용 그리고 시행 시기를 규정한 부칙 등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처리결과(부서 조치내역)

- ▶ 고충처리위의 의견표명에 따라 민원인에게 관련 사실 및 법규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민원인이 이에 수긍하여 미납금을 완납하였으며 이에 따라 압류도 해제하였음.

□ 관련법령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제정

1991. 12. 31., 시행 1992. 7. 1./개정 2015. 1. 20.>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제20조(강제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 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16.>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11916호, 2013. 7.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선 부담금의 감면은 2014년 상반기에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선부담금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 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

5 아파트 입구 장애인 경사로 재설치 요청

□ 민원내용

- ▶ 1993년 3개동으로 준공된 ○○아파트 가운데 2개 동은 아파트 현관까지 직접 접근할 수 있으나, 102동의 경우 당초 1층 현관까지 계단과 장애인 경사로가 함께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입주 당시 1층 주민들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시공사(○○건설)에 강력 항의하여 경사로를 철거하였음.
- ▶ 이에 대해 민원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아파트의 부대시설(장애인경사로)을 임의로 철거한 것은 위법이며, 위법을 방치한 달서구청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경사로 설치에 힘을 써야 한다고 주장함.

□ 사실관계 확인

- ▶ 고충위 주관으로 해당 아파트 관계자(아파트관리소장, 동대표, 민원인, 구청 관계자 등) 간에 해결 방안에 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나, 주민간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상태에서 각자 입장만 표명하고 뚜렷한 해결책은 없었음.
- ▶ 대다수의 주민들은 1993년 건축되어 30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의 불편함에 익숙해져 추가로 사업비를 들여 경사로를 설치하는데 관심이 크게 없는 상태임.
- ▶ 102동 장애인 경사로 철거는 1993년 구청에서 ○○아파트 준공검사 후에 사적자치의 원칙 아래 입주인 상호간의 동의로 이루어졌으며, 그 당시에는 장애인 경사로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었을 것이므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의견표명

- ▶ 1993년 ○○ 아파트 입주 당시 102동 1층 주민들의 요구로 장애인 경사로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다수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경사로를 철거한 것은 법률의 기본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났다고 볼 수는 없음.
- ▶ 민원인이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해 102동 입구 계단에 장애인 경사로 재설치를 요청한 것은 주민 편의 차원에서 필요성은 있으나, 이 역시 입주인들이 공동 사용하는 사유재산의 영역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신설이나 변경 등은 입주인들의 동의를 받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봄.
- ▶ 이와 관련하여 구청 건축과에서도 102동 입주인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공사 등 관계자들과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길 의견표명 함.

□ 처리결과(부서 조치내역)

- ▶ 구청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 관계자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관련법령

-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6]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대상 중 지원기준 연수 조정 필요

□ 민원내용

-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지원 적용범위 항목을 보면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중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 ▶ 이는 구청에서 주민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취지는 좋으나, 요즘 아파트는 건축 구조상 10년이 경과되어도 상당히 깨끗하므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보수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주민의 세금이므로 경과 연수를 상향 조정하여야 함.

□ 사실관계 확인

- ▶ 2007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제3조 ②항에서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당시 건축 기술로 보아 10년 정도 경과하면 공동주택 및 주변 시설의 노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해당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여겨짐.
- ▶ 그러나 2007년 조례 시행 후 15년 정도가 지난 지금은 그동안 꾸준히 발전된 선진 건축기법과 강화된 공동주택 관련법의 영향으로, 사용승인 후 10년 정도는 경과하여도 공동주택 주변 시설물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경우가

많다고 여겨지므로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 조항에 대해서는 기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함.

- ▶ 특히 이와 관련하여 이미“달서구의회 제284회 제2차 정례회(2021.12.2.),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동 조례에 공동주택 관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등) ②항을 개정하는 토의 과정에서 김○○의원의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대하여 적용한다...’라는 언급과 이○○의원의‘..., 지금은 10년 된 아파트를 보면 아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어 있는 상태고...“ 라는 언급 등도 있어 구의회에서도 이 건과 관련하여 이전에도 관련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의견표명

- ▶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①항에서 정한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②항에서 정한 지원대상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에 대해, 요즈음 공동주택은 건축 구조상 10년이 경과되어도 상당히 견실하므로 지원대상 기준연수를 10년 보다 상향 조정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타당성이 있다고 봄.
- ▶ 다만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기준연수를 10년보다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므로 구의회 및 공동주택 관련단체와 협의 및 기타 다른 지지체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시행할 것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의견 표명함.

□ 처리결과(부서 조치내역)

- ▶ 구청에서는 지금까지「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 다만 민원인이 지적한 대로 조례에서 정한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관리지원에 필요한 최소기간 10년 경과의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추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선토록 노력하겠음.

□ 관련법령

-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등) ②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수
2.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보수
3. 하수도 준설 및 보수
4. 보안등 보수 및 전기료
5. 조경시설 관리
6.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
7.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8. 제4조의2 점검결과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9.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보수
10. 택배보관함 설치
11.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1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